

영주시 공고 제2022 - 429호

「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 년 3 월 16 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징수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중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권한 추가(안 제7조)
- 나.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(안 제33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 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주 소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381, Fax(054)639-638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
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

제33조제3호 중 “제25조”를 “제25조 및 제25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납세자보호관의 권한) ①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3조(업무의 범위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</p>	<p>제7조(납세자보호관의 권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업무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 <u>제25조부 및 제25조의2</u> ---- ----- -----</p>